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5. 18.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7년 5월 11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7년 5월 11일

라. 상정일자 : 제20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7. 5. 16.)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국장 서종석)

가. 제안이유

- 고령화, 실업, 다문화 등 복잡·다양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이 행정과 함께 해결하는 ‘협치’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적합한 협치체계를 구축하고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총칙

- 조례의 목적과 정의, 기본 원칙을 규정함(안 제1조~안 제3조)
-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 권리와 의무,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안 제5조)

○ 영등포구협치회의

- 영등포구협치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안 제9조)

-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의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안 제12조)

- 회의 개최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안 제14조)

○ 민관협치 활성화 등

-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7조)

- 협치조정관, 지원조직, 민관협치 협약, 제도개선 및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안 제21조)

- 관련기관 지원 및 협력,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2조~안 제2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최광묵)

○ 본 조례안은 다양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이 행정과 함께 해결하는 ‘민·관협치’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적합한 협치체계를 구축하고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는 주민의 권리와 의무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는 영등포구협치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

- 안 제10조에서 안 제12조는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의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 안 제13조에서 안 제14조는 회의 개최 및 의견청취 등에 대한 사항

- 안 제17조는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사항

- 안 제18조에서 안 제21조는 협치조정관, 지원조직, 민관협치 협약, 제도개선 및

정책평가에 대한 사항

- 안 제22조에서 안 제24조는 관련기관 지원 및 협력, 교육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구 행정에 구민의 역량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하고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협치를 구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
- 다양한 영역에서의 민관 협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흐름을 반영하여 민·민, 민·관 협력시스템 구축 등 지역협치의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구민이 수평적, 능동적, 자발적으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협치 행정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의안 번호	제 217 호
----------	---------

제출연월일 : 2017. 5.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최근 행정환경의 변화 등 민·관의 협력에 따른 정책방향 설정이 중요해짐에 따라 지속가능한 민관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운영체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민관협력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5조)
- 나. 영등포구협치회의의 설치, 구성, 위원의 임기 등 (안 제7조 ~ 제12조)
- 다. 회의 개최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제14조)
- 라.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안 제17조)
- 마. 협치조정관, 지원조직, 민관협치 협약 (안 제18조 ~ 제20조)
- 바. 관련기관 지원 및 협력,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 ~ 제24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 · 성별영향분석평가 ·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 입법예고 기간: 2017.4.13. ~ 5.4. / 20일간

○ 공론화 기간: 2017.4.3.~ 5.4. /입법예고 기간을 포함한 1개월

○ 의 견: 협치회의의 구성원 비율에 대한 의견제출

○ 결 과: 의견을 반영하여 조문 신설

- 제9조(구성) 제5항 신설

▶‘제4항에 따른 협치회의의 민간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2이상 되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관협치”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구정운영 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
2. “협치조정관”이란 민·관 협력을 촉진하고, 민관협치 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자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협치사업”이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민관협치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민관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모든 참여자들은 민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3.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민간과 구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주민은 누구나 구의 정책 결정·집행·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의 관계) 민관협치에 대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영등포구협치회의

제7조(설치) ① 구청장은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영등포구협치회의(이하 “협치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협치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협치회의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기능 등) ① 협치회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정책의 수립·시행·평가·환류에 관한 사항
 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협치회의는 구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구청장은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구성) ① 협치회의는 의장1명, 부의장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이 공동부의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련국장과 협치조정관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민관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시민단체, 직능단체, 공공기관 등이 추천한 사람
2.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이내
3.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4항에 따른 협치회의의 민간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2이상 되어야 한다.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협치회의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협치회의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치회의를 대표하고, 협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4회 개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민관협치 업무를 주관 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4조(의견 청취 등) ① 협치회의는 민관협치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 활동 및 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운영세칙)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치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3장 민관협치 활성화 등

제17조(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① 협치회의는 정책과정에서의 주민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2. 민관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자원 조달
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민관협치 실행계획(이하 “연도별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협치조정관) 민관 협력을 촉진하고, 민관 협치 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자문을 위하여 민관 협력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따라 협치조정관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19조(지원조직) 구청장은 협치사업의 집행총괄 및 제도 개선 실행 등을 위하여 영등포구협치추진단 또는 영등포구협치사무국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20조(민관협치 협약)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추진 시 이해관계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명시한 민관협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실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21조(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구청장은 협치회의가 권고한 구정 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사항에 따라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 간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한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관련기관 지원) 구청장은 협치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치 정책의 발굴과 협치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및 기관 등
2. 협치의 촉진 및 주민참여와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민간위탁 기관

제23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협치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4조(교육) 구청장은 공무원과 주민의 협치역량 개발 등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백서 발간) 구청장은 민관협치 활성화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협치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